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2. 12. 18.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11월 14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11월 1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2012. 12. 10)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김정진 )

가. 제안이유

-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도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정서의 함양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시농업사업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 도시농업, 친환경농업, 도시텃밭, 상자텃밭 용어 정의
- 기본원칙(안 제3조)
  -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위원회 설치(안 제4조)
  -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구성 등(안 제6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그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함
  -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 시 해촉함
- 도시텃밭 등 지정(안 제10조)
  -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상자텃밭의 보급 등(안 제11조)
  - 구청장은 도시농업 참여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안 제12조)
  -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우수사례 발굴 등(안 제13조)
  - 구청장은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의 지원(안 제14조)
  -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도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안 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 도시농업, 친환경농업, 도시텃밭, 상자텃밭 등 도시농업사업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에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6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 (구의원 1명 위촉)으로 구성하되, 그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에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11조에 구청장은 도시농업 참여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2조에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13조에 구청장은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4조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조례안은 도시화와 각종 개발로 인해 회색빛갈로 덮여가는 도시민의 삶속에서 살아 숨 쉬는 흙과 자연을 접할 기회를 만듦으로서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고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기능을 이해하며, 농촌문화 경험을 통한 도심공동체의 삶을 복원하기 위해 도시의 유휴지나 각종 공간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을 보급·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 도시농업은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환경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어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1년 11월 22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5월 23일 시행되었고 서울시에서도 이미 2007년 7월 30일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현재 종로구, 서대문구, 금천구, 서초구 등 총 12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하였고 동법률 제10조 내지 제19조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수립과 지원방안에 대해 규정하면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권장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이 정착되면 도심 유휴지, 자투리땅, 상자텃밭, 체험학습장 등을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으로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공동체적인 삶을 복원하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구현하는 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되나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 범위의 확대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일부 제한된 주민만이 참여하여 전시행정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 참고로 우리 구의 도시농업 현황은 현재 자투리텃밭 2개소 1,694㎡, 옥상텃밭 3개소(198㎡) 총 5개소 1,892㎡가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수는 878명, 구획수는 88구획이며, 사업비는 총 5,800만원 임.

#### 4. 수정안 요지

##### 가.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 나. 주요골자

- 안 제1조 중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 를 “도시농업의 참여와 안전한 먹을거리” 로 하며,
- 안 제4조 중 “둘 수 있다.” 를 “둔다.” 로 하고

○ 안 제6조 제2항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 안 제6조 제4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63호
----------	-------------

제안년월일 : 2012. 12.

제 출 자 : 김화영 위원외 1인

##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 2. 주요골자

- 안 제1조 중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 를  
“도시농업의 참여와 안전한 먹을거리” 로 하며,
- 안 제4조 중 “들 수 있다.” 를 “둔다.” 로 하고
- 안 제6조 제2항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를  
“호선한다.” 로 하며
- 안 제6조 제4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중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도시농업의 참여와 안전한 먹을거리”로 하며,
- 안 제4조 중 “들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 안 제6조 제2항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 안 제6조 제4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도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도시농업의 참여와 안전한 먹을거리----- ----- -----.</p>
<p>제4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제4조(위원회 설치) ----- ----- ----- 둔다.</p>
<p>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한다.</p>	<p>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안과 같음)</p>
<p>② 위원장은 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② -----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③ (조례안과 같음)</p>
<p>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 1명 2. 영등포구 소속 4급 내지 5급 공무원 3명 이내 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p>	<p>1. ~ 6.(조례안과 같음)</p>



6.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조례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63 호
----------	---------

제출연월일 : 2012.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도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정서의 함양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사업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 도시농업, 친환경농업, 도시텃밭, 상자텃밭 용어 정의

나. 기본원칙(안 제3조)

○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위원회 설치(안 제4조)

○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위원회 구성 등(안 제6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함

-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 시 해촉함

마. 도시텃밭 등 지정(안 제10조)

- 구청장은 각종 유흥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상자텃밭의 보급 등(안 제11조)

- 구청장은 도시농업 참여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함

사. 교육(안 제12조)

-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아. 우수사례 발굴 등(안 제13조)
- 구청장은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함  
자. 보조금의 지원(안 제14조)
-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필요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2.10.18 ~ 11.7)결과 : 의견있음

- 제 출 자 : 정재민 (영등포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 주 소 : 영등포구 당산동2가 대우메종리브로 102동 509호
- 검토결과 : 부분반영
  - 제1조(목적)에 ‘친환경’문구 삽입 요청사항은 반영하였고, 기타 의견은 이미 조례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조례안 작성시 검토단계에서 적합하지 않아 미반영

####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사무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검토필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도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
2. 영등포구 소속 4급 내지 5급 공무원 3명 이내
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2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시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 영농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